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629
----------	-------

발의연월일 : 2026. 3. 19.

발 의 자 : 박균택 · 전진숙 · 양부남
이건태 · 권철승 · 주철현
이성윤 · 김문수 · 한민수
위성곤 · 김동아 · 박지원
박상혁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순환자원 인정제도 등을 통해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있으나, 개별 물질 또는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단위의 집적적·연계적 순환이용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양질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산업단지에 소재한 재활용업체 또는 사업장에서 순환이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폐기물로 분류되어 순환이용이 제한되고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함.

이에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고·관리 및 환경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순환경제를 촉진

진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하천 등으로 경계가 구분된 경우에도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 나.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지정 기준 미충족, 신청에 의한 해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규제특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
- 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는 경우 해당 부산물을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여부 통지, 간주수리, 실적 제출 제도, 위해 시 순환이용 중지 명령 제도를 도입함(안 제35조의4).
- 라.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지정 및 운영 지원, 특례 적용 사업장 관리, 순환이용 현황 정보 수집·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5).
- 마.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정보 제공 범위에 규제특례구역 내 순환이용을 포함하고, 규제특례구역 내 사업자를 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에 포함함(안 제39조 및 제41조).
- 바. 특례 적용 사업장을 보고·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지정 해제 신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며, 실적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를 마련함(안 제45조, 제46조 및 제52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이란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내에서 부산물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35조의2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10.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11. “부산물”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건을 말한다.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대상이 도로, 하천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었더라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하나의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내에 부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기업

또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내에 부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기업의 입주수요를 확보하거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경우

②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지정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규제특례구역 신청자”라 한다)가 할 수 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단일 사업장 내에서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③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신청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3(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지정 해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5조의2에 따라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지정을 받은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이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규제특례구역 신청자가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지정을 받은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정이 해제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의4(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특례 적용) ① 제35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내의 사업장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절차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는 경우 그 부산물은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1. 부산물을 배출하거나 순환이용하려는 자가 부산물을 배출하거나 순환이용하기 전에 부산물의 종류, 순환이용의 방법, 위탁·수탁 업체정보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2. 기존 신고한 내용에 변경이 있어 이를 변경신고한 경우
3. 동일한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내에서 순환이용하는 경우
4. 순환이용하는 부산물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변경신고 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변경신고 수리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매년 부산물 배출 및 순환이용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 실적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산물의 순환이용이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순환이용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의5(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지원센터의 지정·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관련 제도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 제35조의2에 따른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지정 및 관리 지원
3. 제35조의4에 따른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내 특례 신고 사업장 관리
4.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내 부산물의 배출 및 순환이용 현황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제1항 중 “순환원료, 순환자원 등”을 “순환원료, 순환자원,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내 부산물 순환이용 등”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 제44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를 “지방자치단체, 제35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내 사업자, 제44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로 한다.

제45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5조의4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내 신고한 자

제4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지정 해제
- 제52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5조의4제4항에 따른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8.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이란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내에서 부산물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35조의2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u></p> <p>10. <u>“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u></p> <p>11. <u>“부산물”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건을 말한다.</u></p> <p><u>제35조의2(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순환경제규제특례</u></p>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대상이 도로, 하천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었더라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하나의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내에 부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기업 또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내에 부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기업의 입주수요를 확보하거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경우

②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지정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규제특례구역 신청자”라 한다)가 할 수 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단일 사업장 내에서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신 설>

③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신청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3(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지정 해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5조의2에 따라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지정을 받은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이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규제특례구역 신청자가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지정을 받은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정

<신 설>

이 해제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의4(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의 특례 적용) ① 제35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순환경제규제특
례구역 내의 사업장 중에서 다
음 각 호의 절차와 기준을 모
두 충족하여 부산물을 순환이
용하는 경우 그 부산물은 제21
조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로 보
지 아니한다.

1. 부산물을 배출하거나 순환이
용하려는 자가 부산물을 배출
하거나 순환이용하기 전에 부
산물의 종류, 순환이용의 방
법, 위탁·수탁 업체정보 등
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2. 기존 신고한 내용에 변경이
있어 이를 변경신고한 경우
3. 동일한 순환경제규제특례구
역 내에서 순환이용하는 경우
4. 순환이용하는 부산물이 사람
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변경신고 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변경신고 수리여부나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매년 부산물 배출 및 순환이용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 실적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산물의 순환이용이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신 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순환 이용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의5(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지원센터의 지정·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관련 제도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 제35조의2에 따른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지정 및 관리 지원
3. 제35조의4에 따른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내 특례 신고 사업장 관리
4.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내 부산물의 배출 및 순환이용 현황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

제39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원료, 순환자원 등의 정보를 관리·제공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이하 “순환자원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그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제44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 ③ (생략)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① -----

-----순환원료, 순환자원,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내 부산물 순환이용 등-----

-----.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① -----

-----지방자치단체, 제35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내 사업자, 제44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신설>

② · ③ (생략)

제

제52조(과태료)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35조의4제4항에 따른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② · ③ (현행과 같음)